

[

국내항공운송사업
]
[

국제항공운송사업
]
면허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9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---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	
	팩스번호		

신청내용	자본금
	사업범위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(여객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(화물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(여객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(화물)
	운항예정노선 또는 사업구역
	운항개시에정일
	임원의 명단

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

[

 국내 항공운송사업
]
[

 국제 항공운송사업
]
 면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2. 해당 신청이 「항공사업법」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는 서류 3. 신청인이 「항공사업법」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항공사업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	수수료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유의사항

1. 면허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운항증명(「항공안전법」 제90조)
 - 나.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(「항공안전법」 제93조)
 - 다.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(「항공사업법」 제14조,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합니다)
2. 면허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에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.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(전화번호 044-201-42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